

##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	승인일	시행일	승인권자
제정	2014.02.07	투자자문업 등록일	CEO

##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### 제1조 (목적)

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트러스트자산운용싱가폴(이하 "회사"라 한다)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관련법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을 따른다.

### 제3조 (수수료의 구분)

이 기준에서 "수수료"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4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보수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기준 또는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.

### 제5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

- ① 회사의 마케팅담당은 해당부서의 신상품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해당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심의하며, 준법감시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마케팅담당 및 준법감시 담당자는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③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의 경우에도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(투자일임의 경우 성과수수료 계산방법 포함)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
**제6조 (설명 의무)**

회사는 법 제 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**제7조 (투자광고)**

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 법 제5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3호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.

**제8조 (공시 및 통보)**

- ①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.

**제9조 (제정 및 개정)**

이 기준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.

**부 칙**

**제1조 (시행일)**

이 기준은 투자자문업 등록일 이후부터 시행한다.